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설치·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5. 2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 4. 23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. 4. 27.
- 다. 상정일자 :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3. 5. 2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준 범 복지행정과장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
용자사업을 실시하는 우리 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
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,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운용관
및 기금운용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조정, 위원의 임기 및 제척 규정을
보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며, 「알기 쉬운
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
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기금운용관의 직위 하향 조정(안 제5조제2항)
 - 「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국장에서 복지행정과장으로 조정
- 2)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(안 제5조의2 신설)
- 3)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직위 하향 조정(안 제6조제2항)
 - 위원장 : 부구청장 => 주민생활국장
 - 당연직위원 : 복지행정과장, 자치행정과장
- 4)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(안 제6조제4항 신설)
 - 임기 3년, 연임 1회 제한
- 5)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규정 마련(안 제6조제5항~제7항 신설)
- 6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전반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「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하향조정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며, 국민권익위원회 「20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」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제척, 기피, 해촉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